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구합62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7. 3. 8.

판 결 선 고 2017. 4. 5.

주 문

1. 피고가 2016. 3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(가산세 포함)을 각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가.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면제 경위

1)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.

2) 원고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, 2013. 5. 24.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을, 2013. 5. 28.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, 2014. 2. 7.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을, 2014. 2. 28.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각 부동산을, 2014. 6. 19. 추가로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1169-39 대 33㎡를 취득하였다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 등'이라 하고, 2014. 6. 19. 추가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.

3)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4. 12. 23.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조세특례제한법'이라 한다)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 등 사용을 위한 절차 진행 경과

1) 원고는 2014. 6. 18.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지에 사옥(이하 '이 사건 사옥'이라 한다)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, 도로점용허가,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신청하였다.

2)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옥 공사에 동반되는 도로점용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[redacted]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. 심의 결과 [redacted]시 도로관리심의회는 2014년도 3/4분기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하였으나, 원고로부터 변경된 도로점용계획안을 제출받는 등 보완이 이루어진 끝에 2014년도 4/4분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 심의를 하였다.

○ [redacted]역 방향 직진 차량과 사옥 진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철저 ○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우려되어 구조 검토 및 보강하여 진입로 좌우측 옹벽 재시공하고 공사 전 도로과와 별도 협의 ○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, 설치 전 교통행정과와 별도 협의 ○ 기존에 설치된 보도 폭(2.5m) 이상 확보 ○ 차도 구간 2차로 이상 파쇄 포장 복구 ○ 출퇴근 시간대 공사 중지, 당일 굴착 복구 ○ 공사시행시 교통신호수 배치 등 교통소통 대책 철저하게 수립 ○ 기존도로 설계속도 감안하여 안전지대 축소로 2차로 가능 여부 검토 ○ 기존도로 설계속도에 따른 정지시거 확보 검토 ○ 도로, 교통, 구조 분야 전문가 의견 제출 ○ 지하차도 진입 전 안내표지판 설치 ○ 공사 전 도로과, 건설과와 사전협의 후 시공

3) 피고는 2014. 10. 17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옥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 준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가하였다(이하 위 건축허가를 '이 사건 건축허가'라 한다).

□ 도로과 1. 도로법 제37조(도로의 구조·시설 등) 규정에 의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하도록 시공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바람. 6. 도로관리심의 의견을 준수하시기 바라며, 옹벽 건축 착공 및 옹벽 공사 전 도로과와 별도 협의하시고 시행바람. □ 건설과 3. 공사로 인한 도로(차도 등) 일시점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시고 공사 관련 자재 등은 도로에 적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4) 원고는 2014. 11. 4.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옥 및 그 진입로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점용허가신청'이라 한다), 피고의 요청에 따른 보완 및 재신청을 반복하였다. 그러나 피고는 2015. 4. 15. '도로점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내용이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하차도 램프구간에서의 차량 진·출입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안전 및 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'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불허처분'이라 한다).

5) 이에 원고는 2015. 7. 14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, [redacted]지방법원은 2016. 5. 31. '이 사건 건축허가로써 이미 허가가 의제된 도로점용에 관하여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건축허가의 하자를 실질적 이유로 삼아 이를 불허한 것은 건축법상의 인 · 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'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2015구합66654)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2017. 2. 8. 기각되어([redacted]고등법원 2016누49206)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부과 · 고지 경위

피고는 2016. 3. 30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.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제되었던 취득세,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면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를 부과 · 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1 내지 7, 갑 제2호증의 1 내지 4, 갑 제5 내지 18, 31, 5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 부지에서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상 ·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허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관련법리
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,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,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·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규정에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·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,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재산 취득 당시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였고, 취득 후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,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).

2)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

앞의 1.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, 22 내지 30, 32 내지 38호증,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, 갑 제50호증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, 즉 ㉠ 원고는 이 사건 사옥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인 2014. 6. 18.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. 10. 17.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. 4. 15. 이 사건 사옥 신축을 위한 도로점용을 불허하는 이 사건 불허처분을 받았으며, 위 불허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옥 신축공사의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, 원고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점, ㉡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부터 이 사건 불허처분을 받은 때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변경된 도로점용계획안이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보완하였고, 실제로 피고가 [redacted]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굴착에 관하여 구체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인 조건이 부가된 조건부 심의를 한 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기에 이르렀는바,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피고는 도로점용허가의 요건에 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, 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 대상 도로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. 나.에서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장소로 정한 '교차·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'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원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이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의 사유로 든 "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"에 반하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위 규칙은 재량행위인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에 반한다는 사정이 곧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원시적인 법령상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점, ㉢ 설령 이 사건 점용허가신청에 위 규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0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심의 및 보완을 거친 끝에 이 사건 건축허가에 이르렀던 경위에 비추어볼 때, 재량판단 주체인 피고조차도 사전에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복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판사 이용희

판사 박보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[별지 1]

목 록

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536-6 대 39㎡, 같은 동 537-8 전 211㎡에 관한

가. 취득세 20,563,330원

나. 지방교육세 2,603,930원

다. 농어촌특별세 433,980원

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537-4 전 614㎡에 관한

가. 취득세 30,958,150원

나. 지방교육세 3,919,720원

다. 농어촌특별세 653,280원

3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536-5 대 131㎡ 및 지상 브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84.36㎡, 브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변호 0.8㎡에 관한

가. 취득세 18,352,900원

나. 지방교육세 2,296,390원

다. 농어촌특별세 382,730원

4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 537-7 전 209㎡ 및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3. 14㎡에 관한

가. 취득세 52,868,410원

나. 지방교육세 6,608,880원

다. 농어촌특별세 1,101,480원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15

[별지 2]

관 계 법 령

■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

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(이하 "벤처기업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(이하 "창업벤처중소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,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.

2. 제조업

제120조(취득세의 면제 등)

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·처분(임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■ 도로법

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

①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도로법 시행령

제54조(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)

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1. 점용장소

나. 도로가 교차·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